

現地에서 본 유럽特許廳의 最近

유럽은 美國·日本 다음의 우리나라의 貿易

I. 머리말

지난 4月 대통령閣下의 유럽 4個國의 巡訪 이후 우리나라의 유럽地域에 대한 關心이 增大되고 있다.

2억7천만의 人口가 사는 유럽은 우리나라에게는 美國·日本에 이은 中요한 貿易對象地域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企業들이 유럽의 貿易市場을 구축하고 輸出競爭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分野의 研究가先行되어야 하겠으나, 그중에서도 特許制度의 發祥地인 유럽 각나라의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EC共同體 會員國家들이 中心이 되어 20年間의 研究와 協力으로 設立된 유럽特許廳(European Patent Office : EPO)에 대한 特許制度와 最近動向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意味있는 일로 생각된다.

参考로 이글은 지난해 筆者가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特許廳 本部와 네덜란드 해이그에 있는 유럽特許廳 支廳(DG1)에서 特許審查 實務에 관한研修를 받은 후작成한研修報告書에다 우리의 現實을 비교하고 說明을 추가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유럽特許廳 現況

1) 유럽特許制度의 略史

유럽大陸에서는 700餘年前에 發明者에게 一定期間 權利를 附與한 事例가 있는데, 그것은 1624年 多色模様織物에 관한 것으로 世界最初의 特許라 할 수 있다.

그후 1624年 英國에서 처음으로 定式의 特許法이 制定되었는데 이 法은 그당시 英國이 지배했던 식민지 國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그중에서도 獨自의 特許法이 없던 美國의 自主的인 特許法 制定에 기

초가 되었다(1790年制定).

프랑스에서도 1762年 루이 15世에 의한 特許宣言이 있었으나 프랑스혁명 時代에 들어와서 發明者들의 壽청에 따라 1791年에 特許法을 制定했다. 이 프랑스 特許法은 스페인·포르투갈·벨기에·룩셈부르크등 諸國의 特許法의 母法이 되고, 그리스·터키·라틴 아메리카諸國 및 舊식민지였던 開發途上國의 特許法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獨逸에서는 獨逸제국 成立(1871年 1月) 이전에 많은 小國으로 分立, 각각 獨自의 特許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各國 特許法의 統一의 必要性이 절실했다. 그후 獨逸제국이 成立되면서 1877年에야 비로소 오랜 懸案이 있던 統一된 獨일 特許法이 制定되었다. 이 特許法의 特徵은 特許의 信賴性을 위하여 世界最初로 審查公告制度를 採用한 점이다.

獨逸特許法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핀마아크 등의 北歐諸國 및 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의 特許法의 母法이 되었고 오늘날의 日本·한국·中共의 特許法制定의 基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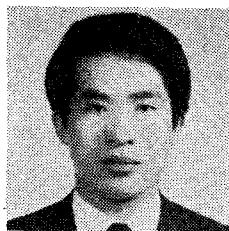
또한 獨逸은 1891年에 世界최초로 實用新案法을 制定함으로써 오늘날 韓國·이태리·스페인·포르투갈·日本·브라질 등의 10餘個國에서도 이 制度를 採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歷史의 바탕위에서 特許制度는 유럽에서 誕生되고 발전되어 왔다. 2차世界大戰이 끝난후 유럽共同體 會員國家들이 中心이 되어 유럽이 하나로 뭉쳐서 효율적인 特許制度의 운영을 기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結果로 1947年에 加盟國에 出願된 發明의 先行技術調查와 一般人에게 Search시설의 便宜提供을 目的으로 國際特許機構(IIB)가 設立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EPO 해이그 支廳의 (DG1)前身인 것이다.

이어서 加盟國에 共通되는 特許法 制定의 准비를 위해서 1949年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유럽評議

動向(1)

對象地



金 元 俊
<特許廳 審事官>

會(Council of Europe)가 開催되었다.

이 評議會에는 特許出願의 方式要件의 統一에 관한
條約과 特許實體法의 一部統一에 관한 條約을 立案되었으며
이것은 EEC國의 專門家들에 의해 檢討되어 1962年
11月에 發表된豫備草案의 確石이 되었고, 이 草案이
오늘날 유럽 特許條約의 基礎이다.

이 유럽 特許條約은 두個條約으로構成되어 있는데
第1條約(正式으로는 유럽 特許附與에 관한 條約; 유럽 特許條約, 약칭 : EPC)과 第2條約(正式으로는 共同市場을 위한 特別條約으로서 第1條約의 142條와 관계條約임; 共同體特許條約, 약칭 : CPC)이 그것이다. 第1條約은 1973年獨逸 뮌헨에서 체결되었고 1977年 10月 7日에 發効되었다. 이어서 1977年 11月 1日에 EPO가
設立되고 1978年 1月 1日에 IIB가 吸收되어 이것이 오늘의 EPO의 해이그 支廳(DG1)으로開設되었다.

같은 해 6月 1日에는 EPO 베를린 支部가 開設되므로서 이 날부터 EPO의 出願接受가 시작되었다. 1979年 6月 1日부터는 實體審查가 시작되었고 1980年 1月 1日에 최초로 유럽 特許 第1號가 附與되었다.

2) 締約國의 現況

유럽 特許廳(EPO)는 EPC에 의해 成立되었고 設立시 加盟國은 유럽共同體會員國 7個國(벨기에·프랑스·西獨·英國·이태리·룩셈부르크·네덜란드)과 非유럽共同體會員國 3個國(오스트리아·스위스·스웨덴) 등 총 10個國으로 구성되었다.

그후 리히텐슈타인이 추가로加入하여 1985年現在 11個國이 됐다. 以外에 1986年에는 스페인이加入할 예정이며, 1992年까지는 그리스·아일란드·덴마크·모나코·노루웨이도加入할 예정이다.

또한 핀란드·아이슬란드·유고·포루투갈·티어카·사이프러스 등도加入國은 아니지만 EPO와協力を 강화하고 있음을 볼때 EPO는 WIPO와 아프리카 特許協

調査速報

■ 이달의 目次 ■

- I. 머리말
- II. 유럽特許廳 現況
- III. 유럽特許制度의 概要
- IV. 유럽特許廳의 最近 動向

<다음號에 繼續>

力機構(ESARIPO)와 더불어 世界的인 廣域特許機構로
발전해 가고 있다.

3) 機構 및 人員

EPO는 다음 <表 1>과 같이 麾長(President) 아래에 5개局(Directorate General)이 있으며, 5名의 次長(Vice President)이 이를 각각 管掌한다. 또한 EPO의 業務를 조정하고 情報를 제공하는 行政協議會(Administrative Council)가 立法的인 機構로存在하고 있다.

DG1은 네덜란드 해이그에 있고 서베를린에 그 支部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DG들은 독일 뮌헨에 있다.

國際特許機構(IIB)의 後身인 DG1은 出願에 대한 方式審查와 先行技術調查書(Search Report)作成의 업무를 담당한다. 1백만건의 技術調查書을 포함한 8백만건의 特許文獻을 保有하고 있으며, 1천6백만건의 世界 주요국가의 特許公報가 씨치화일에 8만2천개의 Sub-group으로 分類되어 檢索審查에 活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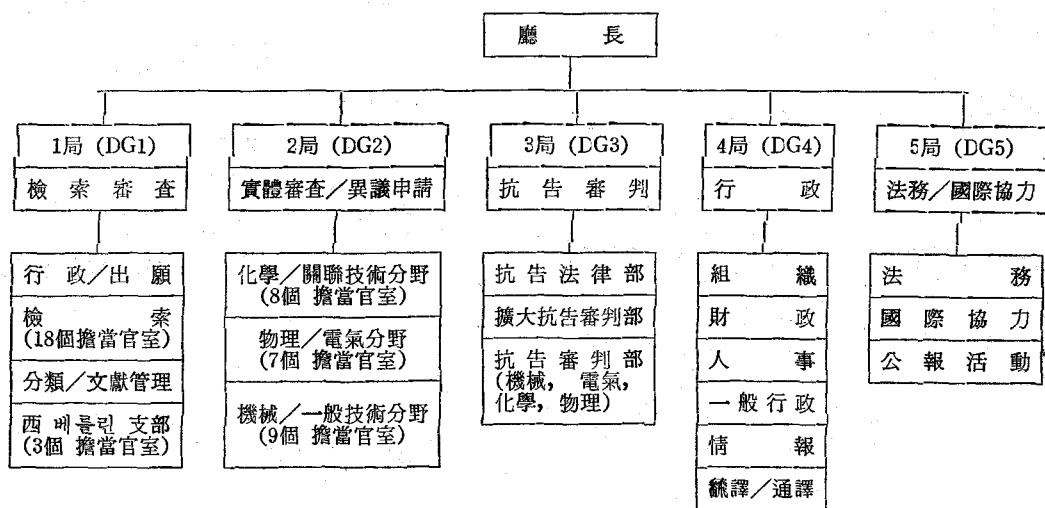
DG1의 組織은 21個의 Search 담당국이 있고 國際特許分類 및 特許文獻管理 부서가 體系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PC分類에 의한 각 專門 Search 審查官들이 매년 5만여건의 檢索報告書를 作成하고 있다.

DG2는 實體審查와 異議申請處理業務를 수행하며 각 審查部는 3명의 技術審查官으로 구성되는 合議體(Third Parties)이다. DG2는 IPC分類에 의거 24個의 審查 담당관실(化學 8·物理 및 電氣 7·機械 9)과 方式審查 및 分類, 文獻擔當官室로 세분화되어 있다.

DG3은 出願接受部 審查部·이의신청·法律部의 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을 담당하고 있는데 4개의 抗告審判局(機械·電氣·化學·物理)과 抗告法律部와 擴大抗告審判部로 구성된다.

DG4는 行政管理部署로서 人事·財政·翻譯等을 담

〈表 1〉 유럽特許廳 組織表



당하고 있다.

DG5는 法律 관제와 國際協力を 담당하고, 특히 開發途上國들의 特許發展을 위한 研修도 수행한다.

EPO는 設立이후 出願이 증가됨에 따라서 人員을 계속 증원해 왔는데, 1984年 現在 技術審查官을 包括하여 1,831名의 스텝진을 保有하고 있다. 구체적인 現況은 〈表 2〉와 같다.

〈表 2〉 EPO의 人員

區 分 内 容	München 本 部	Hague 支 廳	Berlin 支 部	計
行政管理	311	300	15	626
實體審查	397(363)1			367
法務	36(19)2			36
抗告審判	20			20
檢索審查		(518)1	(60)1	578
文獻管理		123	51	174
計	764	941	126	1,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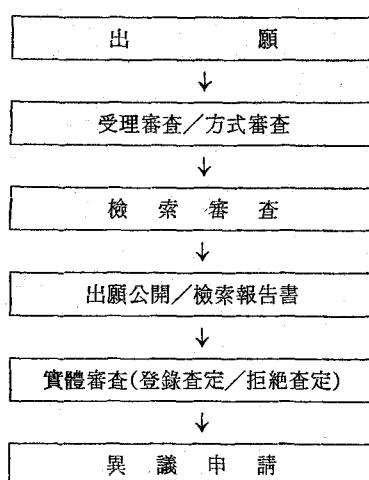
註: ()안의 數字는 1) 技術審查官 2) 辯護士數임.

III. 유럽特許制度의 概要

1) 유럽特許附與節次

特許附與를 위한 節次는 다음 〈表 3〉에서와 같이 크

〈表 3〉 유럽特許附與節次



2) 유럽特許制度의 장점

締約國의 發明의 保護를 증진시키고 비용을 절감시

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特許法은 現在 2억7천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特許를 保護해 주고 있으며, 주요 장점은 經濟性·簡便性·信賴性등 3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다.

(1) 經濟性

유럽特許廳 出願인이 EPC締約國중 3개국 이상을 指定하여 出願할 경우에는 3個國에 각각 出願하는 경우 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 또 保護받기를 希望하는 國家의 數字가 많을 수록 더욱 經濟的이며 全 締約國을 指定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50%까지 절약된다.

다음 <表 4>는 유럽特許出願費用을 分析해 본것이다.

<表 4> 유럽特許出願費用(1985年 現在)

順番	種類	金額	
		DM	圓
1	出願料(Filing fee)	650	227,500
2	資料調査料(Search fee)	2,060	721,000
3	指定料金(Designation fee)	960	336,000
4	審查料(Examination fee)	2,440	854,000
5	登録料金(Fee for grant)	530	185,500
6	権利請求料(Claims fee)	570	199,500
7	其他(翻譯料, 代理人, 選任費用)	—	—
合計		7,210	2,523,500

註 : 1) 1985. 12月 현재 환율(1DM=350원)으로 환산한 것임.

- 2) 指定料金은 3個國 指定을 기준한 것이며 1個國 추가시마다 DM 320(112,000원)이 追加된다.
- 3) 出願人 3個國에서 유럽特許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約 DM 7,210(2,523,500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代理人 選任費用 및 翻譯料가 追加된다.
- 4) 상기 요금중 우리廳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項目(2)(3)의 요금합계는 DM 3,020(1,057,000원)으로 全體 15%에 해당됨.
- 5) 出願人은 상기 (1)(2)(3)항목의 요금을 해이그 DG에 納付하고 審查請求에 의해 審查가 계속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4)(5)(6)의 요금을 追加 부담하게 된다.
- 6) 韓國特許出願料(85年 현재 5,000원)는 EPO出

願料의 2.2%에 해당되며, 審查請求料(85年 현재 기본요금 15,000원)는 EPO 審查料의 1.8%에 불과하다.

(2) 簡便性

出願이 유럽 각나라에 出願할 경우 使用言語·出願節次 및 각국의 特許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不便한 점이 있으나 出願人은 하나의 言語(英語·佛語·獨語 중 指定)를 사용하고 한곳에 다(EPO) 出願할 수 있으므로 매우 便利하다.

또한 締約國 이외의 국가도 파리條約의 加盟國의 국민은 이 制度를 利用할 수 있다는 點에서 우리나라도 극히 注目할만하다.

특히 日本은 유럽特許制度를 잘 活用하고 있는데 매년 5천여건의 出願으로 EPO 전체 出願의 약 15%를 점유하면서 美國과 西獨에 이어 세번째 多出願國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1983년에 4건, 1984년에는 1건을 出願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企業人们的 유럽特許出願에 대한 認識이 提高되어야 할 것이다.

(3) 信賴性

유럽特許制度는 Search와 實體審查가 完全히 분리되어 있고 國家的인 이익보다는 유럽共同體의 입장에서 設立된 것이므로 매우 公正하다. 또한 審查官들도 각 締約國에서 선발된 경험이 풍부한 專門家들로서 新規性 및 進歩性 判斷을 정확히 하여 特許請求範圍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出願人은 자신이 指定한 모든 締約國에서 安심하고 唯一無二한 特許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이다.

IV. 유럽特許廳의 最近動向

1) 特許出願 및 登錄

EPO의 1984年度의 총 出願件數는 33,092件으로 前年度보다 17% 증가하였다.

이 숫자는 設立年度인 1978年에 비해 불과 6년만에 10배로 증가한 셈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1986年以後에는 매년 4만件 以上의 出願이豫想된다. 또한 1984年度의 登錄件數는 총 13,312件으로 前年度보다 38%가 증가된 것이며, 그 중에서 37%는 締約國에 63%는 非締約國에 特許許與되었다.

■ 調査速報 ■

〈表 5〉 特許出願 및 登錄現況

구 분	78 年	79 年	80 年	81 年	82 年	83 年	84 年
出 願 件 數	3,599	11,020	17,505	22,428	25,328	28,132	33,092
Euro-PCT	452	1,770	2,688	3,070	3,639	3,982	4,258
登 錄 件 數	—	—	484	3,351	5,430	9,658	13,312

註 : 1) PCT出願의 增加率은 每年 10% 정도이다.

2) 1984年度 出願중 締約國이 55%, 非締約國이 45%였으며, 매년 非締約國의 出願이 增加되고 있다.

〈表 6〉 審查請求現況

年 度 内 容 區 分	81 年			82 年			83年(01—06)		
	EUR	PCT	계	EUR	PCT	계	EUR	PCT	計
出 願 件 數	22,428	3,070	25,498	25,328	3,639	28,967	13,751	1,926	15,677
審 查 請 求	20,105	2,014	22,119	21,963	2,460	24,423	10,263	1,326	11,589
請 求 率 (%)	89.6	65.6	86.7	86.7	67.6	84.3	74.6	68.9	73.9

註 : 年度別로 전체 審查請求率은 減少하는 경향이며, Euro-PCTEPO 出願의 審查請求率은 增加되고 EPO 出願의 審查請求率은 減少하고 있다.

〈表 7〉 國家別出願現況

締 約 國(55%)		非 締 約 國(45%)				
國 名	出 願 件 數	比 率 (%)	國 名	出 願 件 數	比 率 (%)	
獨	逸	7,966	24.07	美	8,733	26.69
普	朗	2,946	8.9	日	4,845	14.64
英	國	2,450	7.41	캐	303	0.92
이	탈	1,066	3.2	나	120	0.36
네	리	1,060	3.72	洲	100	0.3
스	델	1,563	4.48	라	72	0.22
스	위	489	1.04	마	32	0.1
스	웨	342	1.85	남아프리카	13	0.04
오	트	280	0.14	공화국	6	0.02
벨	리	47	0.09	플	22	0.07
록	기	40	0	랜	1	0.01
리	히			홍		
하	텐			싱가포르		
타	시			대만		
인	타			韓國		

註 : 1) 上記 統計는 1984年度 出願을 基準한 것임.

2) 83, 84年 統計에서 볼때, 出願件數가 많은 國家는 美國, 西獨, 日本 順으로 出願이 되고 있음.

3) 韓國은 83년에 4件, 84년에 1件의 出願이 있음.

상기 〈표 5〉는 EPO의 特許出願 및 登錄現況을 나타낸 것이고, 〈표 7〉은 出願現況을 國家別로 分析한 統計이며, 〈표 6〉은 EPO出願의 審查請求 現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EPO의 出願이 극히 저조하여 우리의 주변국가들과 비교해 볼때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어야만이 EPO에 대한 出願이 증가될 것으로 확신한다.

EPO의 전체적인 審查請求率은 75%의 内外이며 85-年度 우리나라 特許 및 實用의 審查請求는 29,035件의 出願中에서 19,025件이 請求되어 65.5%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外國出願의 國內 審查請求率 총 8,717件의 特許 및 實用의 出願중에서 3,425件이 請求되어 39.3%에 불과했음을 볼때 先進國들의 技術保護障壁이 現存함을 直視

할 수가 있다.

2) 特許審查 및 抗告審判

(1) DG1의 檢索審查

EPO의 DG1에서 행하는 Search業務는 實體審查의 新規性과 進歩性判斷의 重要한 열쇠가 된다.

1983年에 550名의 檢索審查官이 총 52,298件의 Search를 行하였는데, 이것은 每月 한 審查官當 평균 8件정도의 審查實績을 이룬것으로 分析된다.

보통 하나의 出願에 대 한 Search가 完了되는데 까지 所要되는 期間은 18~19個月이며 그중 50%정도가 出願公開後에 追加로 公開되고 있다.

참고로 EPO는 1983年까지 프랑스·和蘭·스위스의 Search를 代行하고 있었으나, 1984年度부터는 프랑스의 Search業務는 代行하고 있지 않으며, 1986年부터는 불가리아와 터키의 特許廳 Search業務를 代行하고 있다.

(2) DG2의 實體審查

뮌헨의 DG2 審查官은 1984年 現在 363名으로 84年 實績을 기준할 때 한 審查官당 每月 약 10件정도 처리한 것으로 分析된다.

특히 1984年에 DG2의 審查官이 41名이 增員되었는 바, 이들은 모두 締約國의 경험이 豐富한 審查官 중에서 선발되었거나 기존辦理士가 일부 채용되었다. 또한 1986年에는 100餘名의 審查官을 더 증원할 예정이다.

EPO의 審查官은 業務量이 많지 않고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담당분야의 技術 및 特許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特許審查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尖端分野의 專工論文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EPO Applied Technology Series」로 하여 총 8권이 發刊되었다. 이를 論文의 主要內容은 半導體·產業用로보트·光纖維·遺傳工學·컴퓨터등의 주요 特許技術를 集大成한 것으로서 해당분야의 特許技術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作成되는 EPO Annual Report에는 중요 技術分野의 技術動向을 간단히 紹介하고 있다.

(3) 抗告審判

1984年에 313件의 抗告審判請求가 있었는데 이것은 前年度에 비해 30%가 증가된 숫자이다.

이중에서 290件은 抗告審判局 (Technical Boards of

Appeal)에서, 23件은 抗告法律部 (Legal Board of Appeal)에 請求되었다. 이 중에서 抗告審判局에서 167件의 判決이 있었는데 그結果는 다음 〈表 8〉와 같다.

抗告法律部에 請求된 사건 중 14件이 判決되었는데 8件은 破棄되었다. 이외에 PCT 17條 (3)(a)에 依해 추가 料金 徵收에 대한 抗告請求가 있었으며 그중에서 6件을 判決했다.

〈表 8〉 抗告審判局 判決現況

(1984年度)

分野	内 容	却下	還送	取扱	拒否	絶対	計
機械		15	37	11	1	64	
化學		9	39	11	1	60	
物理		10	12	2	—	24	
電氣		7	6	6	—	19	
	計	41	94	30	2	167	

註 : 1) 1984年度 抗告申請 비율은 全體의으로 2.6%이며, 이중에서 파기 환송비율은 56.3%이다.

2) 抗告審判請求의 大부분이 異議申請에 의한 경우(특히 口頭審理)이다.

참고로 1985年度에 우리나라의 抗告審判請求는 (이하 特許·實用) 총 600件이었는데, 그중에서 499件이 처리되었고, 審判請求는 328件이 請求되어서 268件이 처리되었다. 〈계속〉

■ 알림 ■

零細發明家를 돕습니다

大韓辦理士會에서는 극빈자가 發明·考案을 하여 이를 出願하고자 할 때 당회소속 辨理士가 무보수로 受任하여 모든 節次를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빈자 發明家 여러분께서는 大韓辦理士會를 많이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 邑·面·洞長이 發行하는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2통

② 發明考案의 要旨說明書 2통
(도면 포함)

* 자세한 사항은 大韓辦理士會 (567-3068 · 568-8517)로 問議바랍니다.